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50, 전송 044-202-3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5-655호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 시험분석법을 재정비하고 제도 운영 중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표준시험법을 정비(안 제5조, 별표 3)
 나. 어린이보호포장의 구체적 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순간접착제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함유 기준을 새롭게 정함(안 별표 2)
 라. 접착제 표기 경고문구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수정(안 별표 2)
 마. 용기 강도시험 적용 대상 수정(안 별표 4)

3. 의견 제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064)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3,677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lunarabbit@korea.kr, kym7990@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전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15-282호

2015년 제4차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5.9.18.)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53개 기관을 2015년도 제4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